

직원복무 규정

제정 2021. 06. 09.

개정 2021. 12. 21.

개정 2024. 02. 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양주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12. 2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본회직제 및 정원규정에 명시된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상사”라 함은 직제, 조직,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 또는 본회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장 복 무

제5조(복무원칙) ① 직원은 본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③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직원은 본회의 기밀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화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나 증여 및 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⑦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②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 ③ 회장은 직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의2(휴일) 본회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5. 1.)
4. 남양주시체육회 창립기념일(6. 8.) (신설 2021. 12. 21.)
5. 체육의 날(10. 15.) (신설 2021. 12. 21.)

제7조(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① 회장은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보상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초과근무명령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명령하되, 예산범위 내에서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의거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신설 2021. 12. 21.)

제8조(결근과 지각) ① 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결근일수가 3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9조(조퇴와 외출) ① 직원이 근무시간 중 조퇴 또는 외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삭제 (2021. 12. 21.)

제10조(출장)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이하“출장 직원”이라 한다)은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기록하고 출장명령을 받은 후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직원이 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3장 휴 가

제11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공가·병가·특별휴가(출산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연가일수) ① 직원의 연가일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연가는 당해 연도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21. 12. 21., 2024. 02. 02.)
② 연가는 1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1. 12. 21.)

③ 회장은 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제13조의2(연가사용 촉진) ① 회장은 소속직원의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당해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로 잔여 휴가 일수를 공표하여 직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사용 시기를 결정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잔여 휴가일수가 있는 경우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할 때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가)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16조(병가) 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상 병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나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여자직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자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여자직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자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여자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⑦ 임신 초기 여성직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⑧ 여직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⑩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02. 0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분할사용불가) (신설 2024. 02. 02.)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신설 2024. 02. 02.)

3. 재직기간 20년 이상: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신설 2024. 02. 02.)

⑪ 회장은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 2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 02. 02.)

제19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1.)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 제21조(사무인계)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수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상의 성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인계에서는 담당사무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과 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입회인이 입회 하도록 한다.
- ③ 기타 사무인계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신설 2024. 02.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가 일수표

(제12조 제1항 관련)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이 상	미 만	
1월	1년	11일
1년	3년	15일
3년	5년	16일
5년	7년	17일
7년	9년	18일
9년	11년	19일
11년	13년	20일
13년	15년	21일
15년	17년	22일
17년	19년	23일
19년	21년	24일
21년 이상		25일

[비 고]

체육지도자, 남양주시체육회 근무경력 및 공무원 근무경력만 인정.

[별표 2] (개정 2024. 1. 00.)

경조사휴가 일수표

(제18조 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본인	5
	○ 자녀	1
출 산	○ 배우자	10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 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1. 12. 21.)

